

# 한복치마 원형제도법 개발을 위한 연구\*

## Exploration of a Prototype Drafting Method for Hanbok Chima

조선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정옥임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sun University

Professor : Ok Im Ju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

### <Abstract>

Hanbok Chima, a Korean skirt, with large-volume should have an archetypal drawing model for appropriate cultural and historical accuracy. In order to develop new Hanbok Chima archetypal drawings we drew a skirt by connecting height with a design structure adopted from Jeogori, a Korean jacket. As a result, an archetypal drawing was developed from which circumference of lower width of Chima, size of pleats in waist circumference, and length of Chima as well as a scheme of layering Chima and Jeogori can be obtained. In this drawing, width of Chima can increase or decrease naturally according to height. However, in case of same heights and different chest circumferences if 2.5cm of additional value is provided for every 5cm increase in chest circumference, Chima of any size can be made based on this drawing. In conclusion, given the demonstrated practicality of designing a Hanbok Chima with large-volume based on archetypal drawing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scientific data for Korean costume designs.

**주제어(Key Words)** : 치마원형설계(prototype Chima design), 키(height), 가슴둘레(chest circumference), 착장도 식화(clothing schematization)

**Corresponding Author** : Ok Im Ju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Korea Tel: 82-62-230-7391 Fax: 82-62-230-8122 E-mail: oimjung@chosun.ac.kr

\* 본 논문은 2008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I. 서론

의복원형설계에서 그 구성설계의 근간은 인체가 중심이 되며 인체를 기저로 해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형태는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정옥임, 2001)되어야 하지만, 한복치마처럼 체적이 인체 보다 큰 경우는 형태나 기능을 고려한 구성 설계가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문화의 중심축이 되는 문화로서의 전통의복이 주관적 경험에 의해 교수·학습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본다.

한복은 전통의복이다. 전통은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 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통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연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발명’ 또는 ‘재창조’ 되는 것(유정아, 1998, p. 94)으로 반복적이거나 변화에 재동을 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통의복인 한복이 그 가치적 존속성만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현대적 기능이라는 기준에 근거한 과거에 대한 해석으로 볼 때 전통의복인 한복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조형적 설계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이라는 단어에 대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해도 개선의 의지 보다 유지자체에 너그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볼 때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에서 막연한 지식전달로는 우리옷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못한 설계방법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수정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복은 부분과 부분을 통합하여 형태를 만들어내는 구성으로 인체에 두르거나 착용하여 사지를 감싼다는 의미에서는 각 민족 간의 옷이라 하더라도 공통적이지만 인체에 착용하여 나타난 형태나 구성방법에서는 다른 경우가 많다(정옥임, 2007). 대부분의 옷이 마름질과정에서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각형의 옷감에서 출발지만 만들어진 형태는 다르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일차적으로 기후의 영향이고, 다음은 그 민족의 생활정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중국인들은 지구가 정방형 모양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전답과 가옥, 그리고 마을을 모두 정방형 원리에 따라 만들었으며 켈트족은 지구가 정방형 모양이라고 생각했고, 마야인들은 모든 사물을 네 개의 기본방위와 관련지어 설명했으며 기본방위들은 사방을 표시하는 십자형이나 단쳐진 공간을 나타내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 안에 그려 넣었는데(Eliade, 이용주, 2006, pp. 94-95) 이는 동양에서 인체를 우주로 보는 견해와도 일맥상통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체에서 머리는 둥글어 하늘을 뜻하고(圓) 몸통은 네모져서 땅을 뜻하며(方), 다리는 세모로 인간(角)을 뜻한다고 보았다(정옥임, 2008). 이러한 사상은 근린 문화권

에 상호 영향을 미쳐 의복구성이 사각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치마도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전통한복치마는 인공적 훼손을 가하지 않으면서 인체를 감쌀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주름을 택했다고 본다. 물론 치마가 아니더라도 동서양의 옷들에서 기능성과 조형성을 위해 주름을 이용한 경우는 많다. 그러나 한복치마처럼 여러 폭을 붙여 주름을 잡고 허리 말을 달아서 가슴 부분에 매어 입는 특징적 형태는 지혜로운 구성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들의 하의로 착용되는 치마는 몽고계통의 말로써 한반도에 치마가 등장한 시기는 漢四郡시대 漢族이 착용했던 裳이라고 볼 수 있다(장석향, 1971). 치마의 기본 형태는 裙과 裳 두 가지가 있는데 裳은 裙의 원형이고 裙은 裳보다 폭을 더해서 더 넓게 만든 것으로서 裙을 美化한 것이다(이여성, 1947, p. 135)고 보아 오늘날 한복치마는 裳보다 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헌상 기록으로는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처음 등장하며 朝鮮女俗考 後周書에 의하면 고구려부인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北史에서도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이능화, 1978, p. 222). 조선시대 세종 2년 원경왕후의 遷尊儀에는 치마(赤紵)로, 훈몽자회에서는 추마상(裳)으로, <內訓>에는 치마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박영순, 2003, pp. 119-131). 또 치마 주름에 대한 것으로는, 성종 8년(1477) 경국대전에 ‘옷은 다 흰 것으로 하는데 布縷가 굵은 것이 많으며 치마는 퍼지게 하되 襞績을 또한 넓게 잡는다(최경진, 1991)고 하였는데 이 치마 주름은 후세로 내려오면서 주름 폭이 적어 오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전통의복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대부분 복식사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치마의 구성적 연구는 참으로 미미하다 하겠다. 특히 인체와의 공물이 큰 치마에 대한 원형설계는 설계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도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치마 제도법과는 달리 원형 제도법 설계에 키와 저고리 원형설계를 연계하여 설계방법의 표준화 가능성을 제시해보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1. 연구방법

한복치마에 대한 제도법 연구는 대학교재에 준하는 ‘한복구성’에서 제시한 치마 제도법을 비교 고찰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 보완, 또는 전혀 새로운 제도법 설계를 위해 키와 가슴둘레, 그리고 저고리원형 제도법과도 연계성을 모색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옷본제도법이 개별적인 제도법으로 구성되는 점을 지양하고 한 벌의 의복으로 착용되는 저고리 제도법과도 연계지어 개개인의 키와 신체치수에 맞는 주름 산출과 착용했을 때의 형태가 바로 인지되도록 제도법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연구에 이용된 저고리 원형설계는 특허 등록(특허 0352706)된 연구자의 제도법이다. 각각의 원형제도법은 연구내용 전개를 위해 편의상 아래와 같이 표기하였다. 이 제도법 설계를 위해 사용된 치수는 국립기술품질원(2004)자료에 의한 여성복 호칭 및 신체치수 중 가슴둘레 85cm, 키 160cm(85-160)를 이용하였다.

※원형제도법의 표기

김분칠: A형(김분칠, 1992, pp. 73-78)

김순심·이유경: B형(김순심, 이유경, 1998, pp. 95-96)

김정호·이미석: C형(김정호, 이미석, 2002, pp. 210-213)

박경자·임순영: D형(박경자, 임순영, 1994, pp. 143-149)

박선영: E형(박선영, 2001, p. 207)

박영순: F형(박영순, 2003, pp. 119-131)

백영자: G형(백영자, 1997, pp. 68-73)

소황옥: H형(소황옥, 2004, pp. 129-161)

손경자: I형(손경자, 1990, pp. 128-140)

안명숙·박진은·장현주: J형(안명숙, 박진은, 장현주, 2007, pp. 56-59)

이주원: K형(이주원, 1999, pp. 201-214)

임상임·유관순: L형(임상임, 유관순, 1999, pp. 168-171)

정옥임: M형(정옥임, 2002, pp. 196-199)

〈표 1〉 교수·학습 자료에 나타난 풀치마 제도의 참고치수 및 산출값 비교

단위 : cm

	키			가슴둘레			치마길이			조끼허리길이			조끼허리둘레		
	대	중	소	대	중	소	대	중	소	대	중	소	대	중	소
A형				88	85	82	115	110	95	31	24	22	가슴둘레+14 96 86 84		
B형	165이상	160~165	160이하				총길이-저고리길이+2 120 115 110			저고리길이-2 24 23 22			윗가슴둘레+16 106		
C형	165이상	160~165	160이하				120	115	110	저고리길이-2 24 23 22			윗가슴둘레+14 106 102 98		
D형				90	86	82	115	110	1005	23	22	21	가슴둘레+14~16 106 102 98		
E형										저고리길이-2			가슴둘레+10		
F형													뒤겹침분:7		
G형													뒤겹침분:6		
H형													뒤겹침분:7~8		
I형													뒤겹침분:7~8		
J형	170	164	158	94	88	84	130	120	114	26	25	24	뒤겹침분:5 105 100 94		
K형							120	115	110	저고리길이-3 23 22 21			가슴둘레+16 106 102 98		
L형	168내외	163내외	158내외	90	86	82	123	118	113	저고리길이-2 23 22 21			가슴둘레+16 106 102 98		
M형													뒤겹침분:10		
N형				90	86	82	125	120	115	저고리길이-2			가슴둘레+16 뒤겹침분:7		
O형													뒤겹침분:8~10		

홍나영, 김남정, 김정아, 김지연: N형(홍나영, 김남정, 김정아, 김지연, 2004, pp. 160-173)

황의숙, 윤양노, 조선희, 이민주: O형(황의숙, 윤양노, 조선희, 이민주 2009, pp. 43-45)

3. 연구의 제한점

비교 연구된 치마의 제도법은 어깨허리, 띠허리 제도법을 제외한 폴치마구성에 한정 하였고 제도법 중에서는 연구자의 이해 부족으로 原典의 내용과 해석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교수·학습 자료에 나타난 치마 제도법

치마처럼 체적이 큰 의복은 착장했을 때의 기능미보다 전 체적 외형미를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제도법에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의복이 설계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하기보다 주관적 경험에 의한

제도방법 때문에 제도법에 일관성이 없고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 한복구성에 대한 인식이 통일된 의식을 갖기가 곤란하다는 점에 있다. <표 1>과 <표 2>는 현재 교수·학습 자료에 제시된 다양한 치마 제도법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치마 제도법에 필요한 치수는 키, 가슴둘레, 치마 길이이지만 키는 치수의 분류단계를 참고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제도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또 저고리와 연계성을 보면 치마에 조끼허리를 달 때 저고리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길이보다 짧게 한다는데 이용되고 있다. 치마치수에서도 각 항목의 치수가 다양함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원형설계 제도법에서 적용치수가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 옷 구성의 원형설계 표준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필요성을 의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옷 본 제도법이 되려면 최소 계측항목으로 제도의 수월성과 합리성이 갖추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표 1>에서 보면 치마제도를 위한 제도방법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중 가장 유사한 옷본을 든다면 <B형>과 <C형>으로 이 옷본들은 조끼허리둘레치수에서 겹침 분량 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부분적인 오류를 보면 조끼허리둘레에서 <B

<표 2> 교수·학습자료에 나타난 치마제도법의 조형적 차이

단위 : cm

옷본	안자락 주름여부	허리둘레 주름분	치마폭 컷트 유무	치마폭 컷트분량	겉, 안 허리선 컷트	비고
A형	10cm남기고 시작		치마폭컷트안함		겉, 안 허리선 컷트	
B형		(210~220)×2.5		6폭일때:10~12 3폭일때:5~7		제도값과제시값에 차이
C형				3폭일때:11		
D형	주름분1개남기고 시작		치마폭컷트안함	3폭일때:12		
E형	6cm남기고 시작			6폭일때:6~7		겉주름나비:0.6~0.7
F형	5cm남기고 시작		치마폭컷트	6폭일때:10		겉주름나비:1
G형	허리둘레전체 주름	치마허리둘레×2.2		6폭일때:11	겉, 안 허리선 컷트	
H형	5~8(전통방식) 8~10(변형형)			3폭일때:12~15		
I형	허리둘레전체주름		치마폭컷트안함			
J형		가슴둘레×2.5~3	치마폭컷트	6폭일때:13		
K형		윗가슴둘레×2.5				겉주름나비:0.5~1
L형				6폭일때:11~12		
M형	10cm남기고 시작					
N형	허리둘레전체주름		치마폭컷트			주름나비:0.5~1
O형	허리둘레전체주름		치마폭컷트	6폭일때:6~7		주름나비:0.7~1

\*110cm치마폭 6폭은 3폭을 2등분 한 것이라고 봄.

형)과<C형>은 가슴둘레치수가 아닌 윗 가슴둘레치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교수학습 자료에 제시된 필요항목에는 가슴둘레치수를 제시하고 있다. 또 <B형>이 제시한 조끼허리둘레 106cm를 대비해 역산해 보면 가슴둘레치수가 90cm가 된다. 2005년 국립기술품질원에서 발표한 20대 여성표준체형치수는 윗 가슴둘레가 82cm로, 이 치수를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82cm + 16cm = 98cm가 되어 제시 값 106cm와는 8cm차이를 보인다. 또 <N형>도 제도에서 허리 겹침 분을 14cm로 하고 산출 식에서는 가슴둘레 + 16cm로 하여 2cm차이가 난다. 여기서 뒤 겹침 분이라 하면 조끼허리 제도 법에서 연장된 치수만을 말하는 것이고, 총 허리둘레 치수일 때는 산출 식인 가슴둘레치수에 더해지는 치수를 말하는 것이다. 겹침 분의 많고 적음은 치마를 착용했을 때 치마 밑폭이 벌어지는가의 문제이고, 또 사용 옷감 폭의 수와 당시의 유행과도 관계가 있다.

<표 2>는 <표 1>의 치마 제도법에 시각적 조형감각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치마와 저고리를 작

용했을 때 실루엣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위해 적용할 수 있는 안자락 주름처리 여부와 너른 치마폭에 따른 허리둘레치수의 컷트 분량 및 외형적 형태에 영향을 주는 허리둘레 주름분의 적절성, 그리고 착용했을 때 걸자락, 안자락의 도련선 처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안자락 주름여부에서는 <G형><I형><N형><O형>이 전체주름을 잡도록 설계되어 있고, <A형><E형><F형><H형><M형>은 안자락에 일정 부분 주름을 잡지 않도록 하여 주름 겹침으로 인해 부풀어 보이는 형태를 지양했다. 그러나 아예 설명이 없는 옷본들도 있는가하면 <D형>처럼 1개의 주름분량을 남기도록 하는 제도법도 볼 수 있다.

허리둘레 주름분에서는 <B형><G형><J형><K형>만이 가슴둘레 중심으로 산출법을 제시했는데 제시되지 않은 각각의 옷본들도 주어진 조건, 즉 옷감 폭(너비), 치마폭 수, 컷트 폭 수를 적용하여 산출값을 계산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은 <표 1>과<표 2>를 참고로 하여 산출해낸 계산값으로 비교를 위한 옷감 너비는 75cm 3폭으로 된 총 너비

<표 3> 교수 학습 자료에서의 산출값과 계산값의 비교

단위 : cm

옷본	옷감폭	치마폭 수	컷트폭 수	총너비(A)	컷트분량*	총컷트 분량(B)	(A)-(B)=C(치마허리둘레)	가슴둘레+뒤 겹침분(D)*	(C)-(D)= 허리주름분	주름분산출 값(D)대비	비 고
A형							225	99	126	2.3	
B형							330	99.5	230.5	3.3	
C형					11	44	181	97.5	83.5	1.8	
D형	75	3	4	225	12	48	177	99~101	76~78	1.8	
E형					6~7	24~28	197~201	95	102~106	2~2.1	
F형					10	40	185	99	93	2	
H형					12~15	48~60	165~177	99~101	73~84	1.7~1.9	
G형					11	110	220	97	90	치마허리둘레×2.2*	제시값과 계산값과 차이
I형							330	99~101	237~238	3.3	
J형					13	130	200	95	110	가슴둘레×2.5×3*	제시값과 계산값과 차이차이
K형	110	3(6)	10	330	10~12	100~120	210~230	101	109~129	윗가슴둘레×2.5*	제시값과 계산값과 차이차이 차이
L형					11~12	110~120	210~220	101	109~119	2~2.1	
M형							330	95	235	3.6	
N형							330	101	229	3.2	
O형					6~7	60~70	260~270	101~105	167~175	2.6	

\* 옷감 폭(6폭)의 제시된 “예”와 산출식을 적용한 것임.  
 ※ 주름분에는 안자락에 허리주름 분을 남기고 시작한 것은 계산되지 않음.

225cm 와, 110cm 3(6)폭으로 된 총 너비 330cm를 기준으로 했는데 옷본을 두 부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은 교수학습 자료에 예시된 컷트 분량을 이용하여 설계상의 계산 값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6폭인 경우, 옷감너비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컷트 분량을 참고하여 옷감너비 110cm(또는 55cm)인 3폭을 6폭으로 나누어 계산 값을 구했다. 이들의 계산 값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옷감 폭의 컷트 분량과 치마허리 겹침 분량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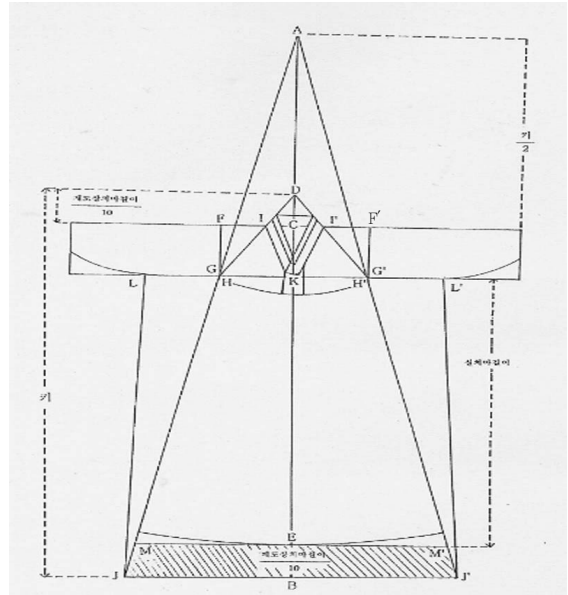
유일하게 주름분 산출식을 제시한 옷본은 <B형> <G형> <J형> <K형>인데 이들에게서도 산출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B형>은 치마밑폭의 총 둘레를, <G형>은 치마허리둘레를 이용하였고 <J형>은 가슴둘레, <K형>은 윗 가슴둘레를 이용하여 주름 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계산 값과의 차이를 보면 치마허리둘레의 2.2배를 산출값으로 제시한 <G형>은 조끼허리둘레의 착오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표3>에서 보듯이 치마허리둘레의 계산 값은 220cm로 이 값을 대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끼허리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97cm×2.2배는 약 213.4cm이나 계산된 값은 220cm로 차이는 6.6cm 차이가 있다. 또 <J형>은 가슴둘레 제시 값이 88cm이므로 뒤 겹침분 10cm를 가산하면 가슴허리 둘레가 98cm이다. 따라서 계산된 주름분은 220~264cm가 되지만 13cm 컷트 분량을 제외하면 200cm이므로 제시 값과 계산 값에는 20cm~60cm의 오차가 있다. 뿐만 아니라 허리주름에서 <G형>의 90cm와 <M형>의 235cm와는 그 차이가 145cm나 되어 적절한 주름분의 기준범위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 외에 컷트 분량을 적용하지 않은 옷본들은 전통방식 그대로 만드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주름이 들어갈 치마허리둘레치수의 적정량과 치마폭 총 둘레치수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치마폭 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2. 치마제도 법 개발을 위한 원형설계

치마, 저고리는 각각의 옷이면서도 따로 생각할 수 없는 한 벌의 옷이기 때문에 제도법은 물론, 착장했을 때의 모습까지 圖式畫 할 수 있는 제도법이 제안된다면 가르치고 배우는데 보다 수월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복구성이 서양의복 구성에 비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셈이 되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치마, 저고리 제도법을 동시에 제도할 수 있다면 우리 옷 구성도 서양복 구성처럼 구성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1>에서 설계의 근간을 이룬 것은 저고리 원형설계 구조에 키와 가슴둘레치수를 적용하여 치마 원형제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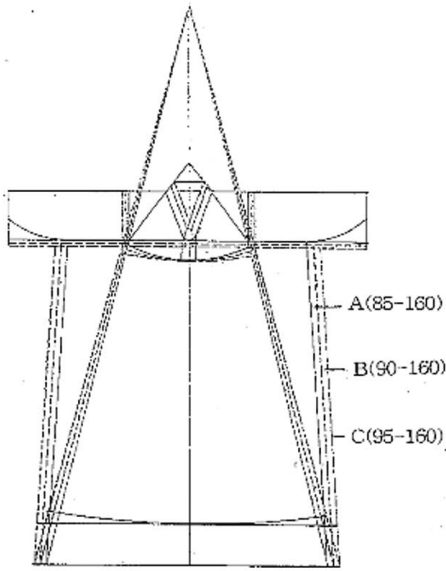
※. 빗금부분은 키에 따라 길이조정

<그림1> 치마제도법 개발을 위한 원형설계 (가슴둘레:85cm, 키:160cm)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인데 제도설계 자체에서 치마저고리의 착장 도식화는 물론 치마 밑폭의 둘레, 치마허리 주름분을 포함한 치수, 치마길이까지 바로 도출되는 원형설계임을 알

<치마 원형제도법의설계>

- (1)  $AB = 키 + \left( \frac{키}{2} - \frac{제도상치마길이}{10} \right)$
- (2)  $AC = \frac{키}{2}$
- (3)  $DB = 키$
- (4)  $FF', GG' = \frac{가슴둘레}{2} + 3cm$  (저고리 품)
- (5)  $CF, CF' = KG, KG' = \frac{가슴둘레}{4} + 1.5cm$
- (6)  $FG, F'G' = \frac{가슴둘레}{4}$  (저고리 진동)
- (7)  $CI, CI' = \frac{가슴둘레}{10}$  (깃고대)
- (8)  $DG, DG' = \frac{가슴둘레}{2}$  (저고리도련과 저드량옆길이 설계기준)
- (9)  $AGJ, AG'J' =$  치마설계기준
- (10)  $KL, KL' =$  저고리 품(치마허리 총 너비)
- (11)  $GM, G'M' =$  실제 치마길이  $\left( \frac{제도상치마길이}{10} \right)$
- (12)  $LL' =$  치마허리폭 너비 (저고리품×4)
- (13)  $MM' =$  실 치마폭 총 너비(제도상치마너비×3)



〈그림2〉 키가 같고 가슴둘레가 다를 경우의 치수변화비교

수 있다. 이 제도법의 적용범위 가능성을 위해 키는 160cm로 같고 가슴둘레만 다른 치수, 즉 85-160, 90-160, 95-160cm를 적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원형제도를 비교해 본 것이 〈그림2〉이고, 〈그림3〉은 치마원형제도에 이용된 저고리 제도법이다.

여기에서 보면 치마폭은 가슴둘레치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품 치수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같은 가슴둘레에 키가 다르면 허리에 들어가는 치마 주름분은 같고 치마폭의 총 너비는 키에 따라 다소 증감되지만, 반면 〈그림2〉에서처럼 키가 같고 가슴둘레치수가 다르면 치마밑폭은 물론 치마허리둘레도 커지는데 가슴둘레치수가 5cm커질 때 치마폭은 2.5cm씩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개발된 치마 원형 제도법 설계는 어느 치수에나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리라고 본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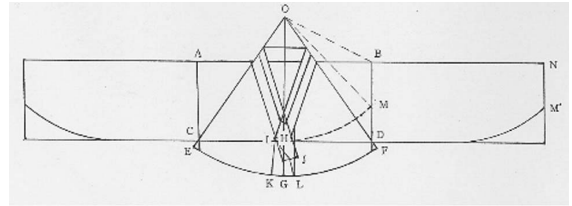
※저고리 제도법

ABCD = 품 AC, BD = 진동 AB = BN

〈표 4〉 개발된 원형설계를 적용한 예

	원형설계에서의 총 치마폭너비			주름포함총허리둘레			가슴허리둘레			치마길이			허리주름분		
	호칭	치수	치수	호칭	치수	치수	호칭	치수	치수	호칭	치수	치수	호칭	치수	치수
호칭	85-160	90-155	90-160	85-160	90-155	90-160	85-160	90-155	90-160	85-160	90-155	90-160	85-160	90-155	90-160
치수	95(285)	99(297)	99(297)	182	192	192	92	97	97	112	106	112	90	95	95

※( )안의 숫자는 만들었을 때의 치수임(제도상치수×3).



〈그림3〉 치마원형설계에 이용된 저고리 제도법

OB = 깃교차점 OH = OM(소매배래) BM = NM'

ABCM = BDNM' (소매) OE = OF(B/2=도련)

〈표 4〉는 〈그림1〉의 치마 원형제도 법이 이용 가능한 설계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슴둘레와 키가 다를 때의 계산 값을 비교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 호칭 85-160을 토대로 주름분을 계산해 보면 안자락 6cm를 남기고 주름을 잡을 때 총 허리둘레 182cm - 6 = 176cm, 176cm ÷ 85cm ÷ 2cm 즉 주름분량은 2cm이고 주름 수는 88개, 컷트 분량은 약 10cm가 된다. 특히 치마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옷감의 너비에 따른 치마폭 수이다. 예를 들면 110cm너비로 치마를 만든다고 할 때 그대로 만들면 3폭이 되겠고 컷트 분량이 없다면 치마폭 총 너비는 330cm가 되므로 허리주름분량이 지나치게 많게 되므로 변에서 컷트를 해주는데 폭을 나누지 않고 컷트를 하게

〈표 5〉 옷감너비에 따른 제한조건

단위 : cm

	30~40	50~55	70~75	90~95
옷감너비	30~40	50~55	70~75	90~95
옷감폭수	8	6	4(8)	6
옷감총너비	240~320	300~330	280~300	270~280
총시접분 92cm일 때	32	24	16	12
실치마폭너비	208~288	276~306	264~284	258~273
융합선수	7	5	3(7)	5
컷트가능 폭수	14	10	6(14)	10

※ 안의 숫자는 컷트 분량을 줄 경우 폭을 나누어 계산한 것임.

단위 : cm

〈표 6〉 교수·학습 자료 제도법과 개발된 치마제도법과의 차이점

단위 : cm

	교수·학습 자료 제도법	개발된 제도법 설계
설계기준	치마길이, 가슴둘레	키, 가슴둘레
저고리와연계성		깃고대, 저고리 품
필요치수	치마길이, (윗)가슴둘레	키, 가슴둘레
치마길이 설계		저고리깃고대가 만나는 꼭지점에서 키 치수 즉 $키 + (키/2 - 제도상치마길이/10)$
실 치마길이	참고치수 또는 계측 값	제도상치마길이 - $\frac{제도상치마길이}{10}$
치마폭너비	치마폭 그대로 사용	키와 깃고대 중심선이 되는 꼭지점에서 좌우 겨드랑이점을 지나 만나는 밑변×3
치마 허리둘레 주름분	산출식이 각각임	저고리품×4
비 고	필요치수 계측	원형제도시 치마폭, 치마길이 컷트분량, 치마허리 주름분치수가 도출됨

되면 한 변 당 컷트 분량이 많게 될 뿐만 아니라 외관도 좋지 않아 이 때 컷트 분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치마폭을 나누어 만들게 된다. 실제 대부분의 한복집에서 50cm~55cm를 기준으로 만들 때 총 치마둘레가 대개 285cm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 여건이나 유행, 만드는 사람의 미적 안목에 따라 치마폭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제도법을 이용할 때도 제도값에 시접분량을 포함하여 만들거나 시접 분량을 따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표 5〉는 옷감너비에 따른 제한조건을 참고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옷감너비가 40cm이상이면 모두 이용 가능한 원형제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위해 교수·학습 자

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도법과 개발된 치마 원형제도법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 〈표 6〉이다.

다음〈사진1〉〈사진2〉〈사진3〉은 시각적 증명을 위해서 개발된 치마원형 제도법을 이용하여 55cm 너비의 옷감으로 6폭의 치마를 치수 85-160로 제작한 것이다. 함께 착용한 저고리도 연구자가 개발한 저고리로, 가슴둘레 85cm로 제작한 것이다.

#### IV. 결론

그 동안 우리옷의 제도법은 전통문화의 중심축이라 하면



〈사진1〉 앞모습



〈사진2〉 뒷모습



〈사진3〉 옆모습



서도 불합리한 제도법의 개선에 소홀함으로써 표준화할 수 있는 설계법이 마련되지 못했다. 저고리, 바지, 버선, 두루마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치마는 인체를 무시한 형태이기 때문에 옷감 폭을 잇댄 후 가슴둘레에 맞추어 여분의 옷감을 주름으로 처리하면 그것이 제도법 이었다. 그러나 경제력이 향상되고 조형감각이 증시됨에 따라 한복도 시대적 유행을 수용하게 되어 폭이 넓어진 치마의 제작방법도 치마 폭의 각 변을 잘라내는 구성법이 적용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복치마는 체적이 큰 옷이다 보니 구성법이 없이 착용자의 가슴둘레에 맞추어 제작하는 방법이 이용되어 학습 자료로 배우고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적이 큰 한복치마이지만 여러 가지 치수와 체형을 아우를 수 있는 치마원형제도 법을 개발해보고자 저고리 원형설계에 키를 적용하여 설계한 결과 치마길이, 치마 폭 너비, 치마 허리둘레와 주름분 등 필요치수가 설계 자체에서 바로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형 즉, 가슴둘레는 같고 키가 다를 때, 키는 같고 가슴둘레가 다를 때에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슴둘레는 같고 키가 다를 때 길이에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따라 치마 폭 너비도 키가 5cm커지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키가 같고 가슴둘레가 다를 때는 가슴둘레가 5cm씩 증가할 때 치마허리둘레와 치마폭너비는 2.5cm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체적의복인 치마도 제도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저고리와 연계된 설계이기 때문에 치마저고리의 전체형태 즉 착장도식화(圖式畫) 까지도 볼 수 있는 치마 원형제도 법이라고 보아 그동안 제도 방법이 부재했던 치마원형제도 법 설계에 조금이나마 의의 있는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국립기술품질원(2004). **의류제품 호칭 및 신체치수**. 서울: 국립기술품질원.  
 김순심, 이유경(1998). **한국의복구성**. 서울: 교학연구사.

김분칠(1992). **한복구성학**. 서울: 교문사.  
 김정호, 이미석(2002). **우리옷 만들기**. 대전: 한남대 출판부.  
 박경자, 임순영 (1994). **한국의상구성**. 서울: 수학사.  
 박선영(2001). **전통한복구성학**. 서울: 수학사.  
 박영순(2003). **전통한복구성**. 서울: 신양사.  
 백영자(1997). **한국의 봉제**. 서울: 교학연구사.  
 소황옥(2004). **여자한복 만들기**. 서울: 경춘사.  
 손경자(2000). **전통한복양식**. 서울: 교문사.  
 안명숙, 박진은, 장현주(2007). **우리옷 만들기**. 서울: 교문사.  
 유정아(1998). **전통성의 현대적 발견**. 서울: 서울대출판부.  
 이능화(1978). **조선여속고**. 김상억(역). 서울: 대양서적. (1927년 원저발간)  
 이여성(1947). **조선복식고**. 경성: 백양당.  
 이주원(1999). **한복구성학**. 서울: 경춘사.  
 임상임, 유관순(1999). **한복구성**. 서울: 교문사.  
 장석향(1971). 여자치마의 역사적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옥임(2001).한복바지 원형설계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0), 98.  
 정옥임(2007). 한복여자 두루마기 원형설계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3), 12.  
 정옥임(2008). 저고리 마름질 풀과 심슴지의 기호학적 유사성연구. **복식**. 58(9),43.  
 정옥임(2002). **천·지·인 우리옷 구성**. 서울: 수학사.  
 최경진(1991). 한복주름에 관한연구. **복식**. 4(16), p. 87 재인용  
 홍나영, 김남정, 김정아, 김지연(2007). **한복만들기**. 서울: 교문사.  
 황의숙, 윤양노, 조선희, 이민주(2009). **아름다운 한복구성**. 서울: 수학사.  
 Eliade, M.(2006). **세계종교사상사**. 이용주(역). 서울: 이학사. (1956년 원저발간)

접 수 일 : 2009년 10월 16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2월 22일